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산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유전열
전화 051-606-4164

보도자료
2020. 11. 18.(수)

제 목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2020. 11. 17. 부산지방검찰청 환경·공직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조홍용)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수사대상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해 주고, 공무상 비밀인 그 수사대상자와 관련된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사실 및 그 후 집행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(51세, 부산○○경찰서 경위)
- B○○(55세, 무직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(A○○) 2018. 5. 26. ~ 9. 19. 자신이 구속 송치한 B○○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법률상담 및 경위서 등 법률 관계문서를 작성해 주고, 공무상 비밀인 B○○와 관련된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사실 및 그 후 집행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B○○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, 2018. 5. 15. 및 6. 9. 위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사실을 B○○에게 알려줌 [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, 변호사법위반,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
- (B○○) 같은 기간 위 뇌물 제공 [뇌물공여]

II

수사 경과

- 2019. 9. 25. 수사착수
- 2020. 1. 20. B○○ 휴대전화 포렌식 실시
- 2020. 4. 17.~10. 27. A○○, B○○ 및 참고인 조사
- 2020. 11. 17. 불구속 기소

III

수사 의의

- 본 사안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구속 송치했던 수사대상자에게 접근하여, 금품을 받고 수사대상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구속 송치한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주는 등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것임
- 더 나아가, 금품을 받고 공무상 비밀인 ‘관련사건 주범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그 이후 집행 사실’까지 제공하여 수사대상자의 항소심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,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,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
- 수사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,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을 엄벌함으로써,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수사 등 직무수행에 있어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☑